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59
----------	------

2024년 3월 5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2월 5일, 남궁역 의원 외 20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다. 상정일자 : 제32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3월 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남궁역 의원]

가. 제안이유

-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이식수목, 기증수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또한, 도시녹지의 시민참여 관리를 위해 협약체결, 물품 지원 등에 대해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주택재건축, 재개발, 각종 정비사업시 이식된 수목을 녹지관리청은 녹화사업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 2) 개인, 회사, 단체, 법인이 참여하는 녹지의 실명관리시 협약을 체결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6조제3항).
- 3)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6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이식수목과 기증수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녹지의 시민 참여 관리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주택재건축시행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나무은행’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수목을 예치(지장목 등 일정기간 보관 및 관리)하고 수목을 알선(온라인 나무나눔 공간을 통한 알선)한 바 있음.
- 그러나 수목의 입출·관리·보관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목의 예치’는 일부 자치구에서만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예치’보다는 ‘알선(나무나눔)’ 위주로 사업을 추진¹⁾하였으며, 기증하는 수목이 있을 경우 녹화사업대상지에 직접 이식하거나 수요처에 알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안 제3조제8호 및 제35조제1항에서 주된 사업방식인 ‘나무나눔’으로 수정(정의)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수목을 재활용하여 녹화사업에 제공하고 재활용 수목의 이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36조제3항(녹지의 실명관리)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현재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지관리 문화확산을 위해 ‘나무돌보미’ 사업²⁾

1) ‘나무나눔’ 사업 추진계획(공원녹지국, 조경과, 2012. 3. 7.)

2) 2024년 나무돌보미 사업 추진계획(조경과-631, 2024.1.16.)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녹화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시민, 단체, 기업 등과 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동 사업³⁾은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위촉장을 수여하는 것보다 세부내용을 정해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3) 내 손안에 서울(2005.4.25.), “시민이 직접 푸른 서울 가꿔요” 녹지관리실명제,

녹지관리실명제는 시민이 생활주변의 녹지를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현재 시내 25개 자치구의 공원, 마을마당, 녹지대, 가로수 등 1천757개곳에서 1만 명의 그린오너가 활동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 단체, 회사 등을 그린오너 (Green-Owner)라 하는데 청소, 물주기, 꽃심기, 잡풀 뽑기, 수목표찰 달기 등 현장활동 그린오너와 공원·녹지관리 기술을 제공하는 기술지원 그린오너로 구분한다. 자치구에 참가신청한 후 위촉을 받아 활동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도시녹화”라 함은”을 ““도시녹화”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이라 함은 「도시」”을 “이란 「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단일토지”라 함은”을 ““단일토지”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나무은행”이라 함은”을 ““나무나눔”이란”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을 “발생하는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한”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약기간”을 “녹지활용계약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중 “계약기간”을 “녹지활용계약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나무은행)”을 “(나무나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 녹지관리청에 설치된 나무은행을 활용”을 “시장은 녹화사업에 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재활용 수목의 이식을 위하여 이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제3항 중 “위촉장을 수여하여”를 “협약을 체결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드는 비용”을 “필요한 물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녹화계약”이라 함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 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따라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5. “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6. “공공공익시설”이라 함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7. “단일토지”라 함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결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단체)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8. “나무은행”이라 함은 주택재건축시행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4. -----이란 -----

-----.

5. -----이란 -----

-----.

6. -----이란 「도시-

-----.

7. “단일토지”란 -----

-----.

8. “나무나눔”이란 -----

----- 발생
하는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한 -

수 있다.

③ (생 략)

제36조(녹지의 실명관리) ①·②
(생 략)

③ 녹지관리청은 위촉장을 수여하
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녹지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녹
지를 실명으로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다.

다.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녹지의 실명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협약을 체결하여
-----.

④ -----

--- 필요한 물품-----.